

전주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5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억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30.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소5333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045,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9. 남원시 C 외 1필지 D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4. 17. 소외 주식회사S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부과되었던 가스요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할 무렵 이 사건 건물들에 대한 LPG가스 공급을 중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7.부터 2020. 3. 1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과된 연체가스요금 26,045,32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연체가스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 공급자인 피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는 등의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그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피고에게 위 연체요금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납부행위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납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045,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기 전부터 가스요금체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전라북도 내에 307개의 LPG 가스 공급업체가 존재하여 피고가 독점적 지위에서 가스를 공급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신탁재산 공매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17조는, 공매물건에 대한 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의 미납금액은 매수자의

책임하에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건물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세공과금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임의로 피고에게 연체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